

## I. 반론보도청구사례

### **피신청인측 자료만으로는 ○○○금주학교가 수용자를 불법 감금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반론보도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6. 10.자 판결 (2004카합931)

####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2004년 6월 10일 ○○○금주학교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방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학교에는 방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쇠창살이 쳐진 감금실에는 20여명이 갇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라도 이들을 감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와 쇠창살들이 수용자들을 불법으로 감금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은 이와 같은 방송 내용에 의하여 자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반론보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반론보도는 그 성질상 반박이나 반론적 내용에 한정되고 원 방송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중 일부는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에 반함을 전제로 하여 그 정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의 한계를 넘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보이는 내용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신청인 주장을 일부만 인용하였다.

문화방송은 2004년 3월 21일 21:20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돈 주면 납치, 감금’ 이라는 제목으로 ○○○금주학교가 알코올 중독자 수용시설을 운영하면서 방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쇠창살이 쳐진 감금실에 20여명을 가두는 등 돈만 주면 생사람을 불법적으로 감금·납치하는 등의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4년 4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4서울중재141)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4카합931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1. ○○○금주학교

대표자 학교장 박 ○ ○

2. 박 ○ ○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 얼

담당변호사 백 주 흠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금 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 성 규

변론종결 : 2004. 5. 20.

판결선고 : 2004. 6. 10.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같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내용을 방송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신청인들에게 매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신청인들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상단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자 두 줄로 “○○○금주 학교 폭행·감금·납치한 적 없음”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반론보도요구문을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매주 10,0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내지 5호증, 소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 ○○○금주학교(이하 신청인 학교라고만 한다)는 조건부 정신질환시설로서 알코올 중독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이고, 신청인 박○○은 신청인 학교의 대표자이며, 피신청인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4. 3. 2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돈주면 납치, 감금”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학교에 돈을 주며 부탁하면 신청인 학교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정상인 사람도 의사의 진단서 없이 불법으로 납치하며, 방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쇠창살이 쳐져 있는 감금실에 감금하며, 신청인 학교에 납치되어 온 사람들이 6개월 이상 불법적으로 감금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별지 방송내용 기재와 같은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신청인들은 이 사건 방송에 대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주장하므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각각 살펴본다.

가. 신청인 학교의 사업목적, 사업활동 및 신청인 박○○의 활동 등에 관한 내용(별지 반론보도요구문 중 (2)내용과 (5)내용 중 후문)

방송법 소정의 반론보도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 반론보도는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반론이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분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이라기보다는 신청인

의 주관적인 가치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져 반론보도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신청인 학교에 돈만 주면 신청인 학교가 정상인도 납치, 감금 한다는 취지의 방송은 허위이며, 어떤 사람이 강제로 납치되는 장면은 피신청인의 취재진의 연출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별지 반론보도요구문 중 (3)내용}

반론보도는 그 성질상 반박이나 반론적 내용에 한정되고 원 방송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 반론보도는 이 사건 방송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사실적 진술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에 반함을 전제로 하여 그 정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의 구성 및 내용과 소을 제3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반론보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신청인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와 쇠창살에 관련된 내용{별지 반론보도요구문 중 (4)내용}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취재기자를 통해 신청인 학교에는 방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쇠창살이 쳐진 감금실에는 20여명이 갇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라도 신청인 학교가 이들을 감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신청인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와 쇠창살들이 신청인 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은 이와 같은 방송 내용에 의하여 자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 방송 내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반론보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방송의 구성 및 보도내용과 취재 및 보도경위, 그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반론보도문의 방송방법 및 방송내용은 별지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이 고쳐서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신청인 학교 수용자의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별지 반론보도요구문 중 (5)내용 중 전문}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납치되어 온 사람은 6개월간 갇혀 있어야 되고, 탈출하다 잡히면 열흘간 가두고 굶긴다는 신청인 학교 수용자의 진술은 타인에 대한 극심한 경계심과 적개심에 빠져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거짓말일 뿐이라는 반론 내용은 사실적 진술 또는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신청인들의 위 수용자의 진술에 대한 주관

적인 평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용의 반론보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학교에 취재요청을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취재하였을 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내용{별지 반론보도요구문 중 (5)내용 중 전문}

피신청인이 신청인 학교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취재하였다는 반론 내용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한 사실적 주장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한 반론이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반론 부분은 사실적 진술이라기보다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신청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론보도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

### 3. 간접강제

한편,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간접강제명령을 발하기로 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건 일

판사 김 상 훈

판사 오 권 철

## 반론보도문

(1) 방송방법 : 중앙상단 화면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기사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기사 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자, 줄 간격, 글자 간격의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방송내용 : 문화방송은 2004. 3. 2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금주학교는 방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쇠창살이 쳐진 감금실에 20여명씩 감금시켜두는

등 불법감금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 보도를 한 바 있으나, ○○○금주학교는 감시카메라나 쇠창살의 설치는 회복과정에 있는 수용자들이 자해하거나 투신하는 등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고 불법감금을 한 바는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반론이 게재되었고, 청와대브리핑을 통한 반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7.자 판결 (2004카기3019)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004년 8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언론사를 통해 반론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미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보도가 행해진 언론사와 타 언론사 사이에는 독자의 범위가 같지 않으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보도를 한 당해 언론 측에서 스스로 그 보도의 부정확성에 관해 보도하지 않는 한, 당해 보도를 접한 독자나 시청자가 반론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신청인의 반론 내용이 공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으며, 신청인이 청와대 브리핑 등의 경로를 통해 사실상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적법한 권리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어떤 기사가 보도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반론보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시기적으로 보아 적기를 상실하여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신청인이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인 바, 언론중재 절차 및 법원의 재송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된 기간으로서 단지 시기적으로 상당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신청의 정당한 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2004년 2월 13일자 1면 『노 대통령 또 총선거 개입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대통령인 신청인이 민정수석, 법무장관 등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4년 3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4서울중재105)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는 중재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4카기3019 반론보도심판

신 청 인 : 노 무 현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전 태 진, 김 혜 라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변론종결 : 2004. 8. 6.

판결선고 : 2004. 8. 27.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동아일보 3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24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동아일보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금 삼백만(3,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1면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24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명조체 12급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만약 피신청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의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금 오백만(5,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004. 2. 13.자 1면에 『문재인, 정찬용 수석 - 강금실 법무에 출마 권유, 盧대통령 또 총선개입 논란, “黨서 원하는데 한번 나가자 그러느냐”, 문 민정수석 사퇴 ... 후임에 박정규씨』라는 제목하에 ‘신청인(대통령)이 문재인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정찬용 청와대인사수석비서관, 강금실 법무부장관 등에게 총선출마를 사실상 권유했던 것이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밝혀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같은 날 신문 5면에는 『‘총선 올인’... 국정 맡길 사람이 없다』라는 제목하에 “신청인이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총선출마 압력을 받아온 핵심참모들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발언을 한 것이 밝혀졌다. 4·15 총선 ‘올인 전략’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청와대와 내각에 충원한 ‘인재 풀’이 고갈되어 총선 징발에 따른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적임자를 찾지 못함으로써 후임 임명을 미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재 풀이 고갈됨에 따라 신청인은 새 정부 출범 때 기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발탁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이상 1면과 5면의 게재 기사를 합하여 ‘이 사건 보도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판 단

### 가. 반론보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사에서 직접 언급된 신청인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직, 간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장관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하였고, 고위관료들의 총선 출마에 따라 그 자리에 새로 충원해야 할 인물을 구하지 못하여 후임 인사를 미루었으며, 새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발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자기 인식이나 고유한 인격적 범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먼저 이 사건 보도기사는 청와대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 취재에 의해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 보도 내용이 모두 진실인데 반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하게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반론보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 등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그 대립되는 주장들을 자신의 식견과 견해를 토대로 자유롭게 판단케 하여 공정한 여론 형성을 기하고, 또한 당사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 제도로서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 기사에 대한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할 뿐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다만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권리의 남용이 될 뿐 아니라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이를 반론보도문 게재의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반론보도문 게재의 거부 사유인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함은 반론보도문의 주장 내용이 일반적인 경험사실이나 신문, 방송, 이미 공표된 연구결과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진 사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임을 즉각 알 수 있는 경우 혹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법원이 당해 사건이나 다른 사건의 처리를 통해서 지득한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을 보면, 기록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정당한 이익의 존부

피신청인은 또한 ①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이 사건 보도를 전후한 시기에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발표된 내용일 뿐 아니라, 신청인은 언제라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청와대 브리핑 등을 통해 반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② 이 사건 보도기

사의 내용인 출마 권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들의 발탁 등은 모두 신청인의 권한 범위 내의 일이므로 보도 내용 자체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층선이 이미 지난 2004. 4. 15. 실시되어 종결된 만큼 이 사건 반론보도는 시기적으로 적기를 상실하여 현실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한 이익을 길하여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①점에 관하여 보면,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는 당해 언론사의 보도를 이미 접한 독자 혹은 시청자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득하게 된 사실에 대해 사후적으로 반박함으로써 공정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사 다른 언론사를 통해 반론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미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보도가 행해진 언론사와 다른 언론사 사이에는 그 독자의 범위가 같지 아니하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보도를 한 당해 언론사 측에서 스스로 그 보도의 부정확성에 관해 보도하지 않는 한, 당해 보도를 접한 독자나 시청자가 이미 지득한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신청인의 반론 내용이 공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인 이상, 신청인이 청와대 브리핑 등의 경로를 통해 사실상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적법한 권리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②점에 관해 보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란 신청인측에서 보아 원문보도에 대응할 실질적 이익 내지 필요성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므로, 원문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신용에 현저한 타격을 입었을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자기 인식이나 고유한 인격상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그 보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도기사로 인한 신청인의 명예 훼손이 없음을 원인으로 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③점에 관해 보면, 어떤 기사가 보도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기사의 내역이 독자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망각된 후에 새삼스럽게 이에 대한 반론보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시기적으로 보아 적기를 상실하여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신청인의 태만으로 인해 실기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신청인이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 이후 1달 정도 경과한 시점으로 4·15 총

선 이전인 2004. 3. 13. 반론심판청구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언론중재신청을 제기한 사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04. 3. 22. 위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04. 3. 26.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신청인이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04. 4. 9. 이 법원에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총 5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쳐 2004. 8. 6. 변론종결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보도 이후 6개월여가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나, 이는 신청인의 태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 및 법원의 쟁송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된 기간이라 할 것이어서 단지 시기적으로 이미 총선이 실시되어 상당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의 정당한 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 다. 반론보도문의 범위 등

결국, 문제가 된 피신청인의 기사내용과 길이 및 이로 인하여 침해된 신청인의 법익, 신청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 기록상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게재방법은 위 기사가 실린 위치, 활자크기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며, 이와 아울러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명령을 발령하기로 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 2항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태 운

판사 김 연 학

판사 전 휴 재

### 반론보도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04. 2. 13.자 동아일보 1면 『노대통령, 또 총선개입논란』, 5면 『‘총선올인’ … 국정 맡길 사람이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민정수

석비서관, 정찬용 인사수석비서관, 강금실 법무장관 등에게 총선 출마를 사실상 권유했으며 총선 출마에 따른 빈 자리를 채울 후임자를 찾지 못해 인사가 미뤄지자 가급적 기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발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위 인사들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던 사실이 없고, 총선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자리를 메우는 후속인사에 후임자를 찾지 못해 인사를 미룬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발탁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반론보도청구인 노 무 현

□

##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더라도 기사 전부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거나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반론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7.자 판결 (2004카기4999)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004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기록상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원문보도 후에 당해 언론사가 종전의 보도를 수정, 정정하거나 스스로 피해자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보도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잘못된 기사 전부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거나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에 정당한 이

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민일보가 2004년 5월 11일자 1면 『강남구 특혜인사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강남구가 검찰 고위직의 친형을 특혜인사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2004년 5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4서울중재201)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가 중재결정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의신청 후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4카기4999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

대표자 구청장 권 문 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8-28 국제빌딩 3층

대표이사 서 창 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문 흥 주

변론종결 : 2004. 7. 30.

판결선고 : 2004. 8. 27.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민일보'의 1면 좌측 상단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28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시민일보' 본문 활자 크기로, 반론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18급 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매일 금 오백만(5,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간지 '시민일보'의 1면 좌측 최상단에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두 줄로 고딕체 5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본문 활자 크기로, 반론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22급 활자 크기로 게재 하라는 판결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

## 이 유 :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지 ‘시민일보’ 918호(2004. 5. 11.자) 1면 머리기사로 “강남구 특혜인사 말썽”이라는 제목 아래, “검찰 고위직 ‘친형 봐주기’ 의혹 제기”라는 발문을 달고, 별지 원문보도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판단

#### 가. 반론보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서 직접 언급된 신청인은, ‘검찰고위직의 친형봐주기식 인사를 단행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먼저,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상의 ‘강북구청에서 근무하던 송모 과장’이 현직 검찰총장의 친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위 송모 과장이 강북구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나 강북구청에서 인사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거나, 공무원 노조나 시민단체에서 송모 과장의 강북구 복귀를 공식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하게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반론보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론보도청구권은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기사에 대한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할 뿐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다만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권리의 남용이 될 뿐 아니라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는 이를 반론보도문 게재의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반론보도문 게재의 거부 사유인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함은 반론보도문의 주장 내용이 일반적인 경험사실이나 신문, 방송, 이미 공표된 연

구결과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진 사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임을 즉각 알 수 있는 경우 혹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않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법원이 당해 사건이나 다른 사건의 처리를 통해서 지득한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기록상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정당한 이익의 존부

피신청인은 또한 이 사건 기사 자체에 신청인측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민일보 934호(2004. 6. 3.자)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는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는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사가 스스로 사후 보도에 의하여 원문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종전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하였거나 원문보도 자체에서 피해자의 반론을 충분히 게재한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로서 목적하는 상태가 이미 실현된 것으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문보도 후에 당해 언론사가 종전의 보도를 수정, 정정하거나 스스로 피해자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보도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잘못된 기사 전부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거나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중 강남구의 실질적인 반론은 『강남구 관계자도 “당초 정씨가 …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송씨 인사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부분 정도라고 할 것인데, 이로써 신청인의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피신청인이 시민일보 934호(2004. 6. 3.자)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것은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 바로 좌측에 “송과장 복귀 여부 협의 중”이라는 제목 하에 “강남구 특혜인사 관련 잘못된 인사 사실상 인정”이라는 발문을 달고 반론보도문의 취지와는 반대되는 기사를 반론보도문보다 훨씬 비중 있게 다룬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 반론보도문은 반론보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론보도문의 내용, 범위 등

(1) 반론보도문의 내용

다만,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 내용 중, ①『강남구 특혜성 인사 의혹 사실무근』,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강남구는 특혜성 인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당초 송모 사무관이 강북구에서 강남구로의 전출을 희망한 사유는 ... 거주지와 비교적 가까운 강남구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근무하게 된 것일 뿐 강남구가 무슨 특혜를 바라고서 혹은 특혜를 주는 인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원문보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사실적 진술로서의 반박이라기보다는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평가이거나, 신청인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충적·추가적 진술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주관적 반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경우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②『작년 8월 서울시 자치구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교류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라고 구두로 권고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라는 부분은 원문보도 자체에 서울특별시 인사담당직원의 반론을 게재함으로써 나름대로 반론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인사담당직원이 2003. 8.경 인사담당자 회의를 비롯하여 수 차례 각 구청에 인사교류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구두권고 한 사실이 소명되어 위 반론보도부분은 객관적 사실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2) 반론보도문의 범위

결국, 문제가 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길이 및 이로 인하여 침해된 신청인의 법익, 신청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이

사건 기사에서 반영된 신청인의 반론의 대상 등 기록상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게재방법은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위치, 활자크기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며, 이와 아울러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명령을 발령하기로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 2항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태 운  
판사 김 연 학  
판사 전 휴 재

## 〈별지 1〉 반론보도문

시민일보 제918호(2004. 5. 11.자)는 1면 머리기사 ‘강남구 특혜인사 말썽’이라는 기사에서 “강남구가 인사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시·구간 전출입 인사과정에서 검찰 고위직의 ‘친형 봐주기’ 식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강남구는 2003. 9. 25. 서울특별시와 강북구 등 3자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당시 강북구청 소속의 송모 과장이 현직 검찰 고위직의 친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강남구가 서울특별시 및 강북구와 사이에 인사교류를 실시하게 된 것은 당시 강남구청 소속의 모 사무관이 자체 감사결과 문제점이 지적되자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강북구청장의 기관동의를 거쳐 서울특별시로 전출하고, 서울특별시 소속의 모 사무관은 그의 지원에 의해 강북구청으로, 강북구청 소속의 송모 과장도 그의 지원에 의해 강남구청으로 각 인사교류를 단행한 것일 뿐이다.

한편, 송모 과장이 강북구로 원상복귀하지 않고 강남구청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은 그가 검찰 고위직의 친형이기 때문에 강남구가 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서울특별시나 강북구청에서 인사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나 시민단체에서 강남구에 대해 송모 과장의 강북구 원상복귀를 공식요

구한 적도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별지 2〉 반론보도문, 원문보도 생략 — 편집자 주



**신청인이 합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0.자 판결 (2004카기6193)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004년 9월 10일 열린우리당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떤 안건에 대하여 논의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특히 민감한 사안의 경우 그 합의 여부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이고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라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성, 표현 등에 비추어 위 기사가 ‘예결위를 상임위로 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작성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신청인이 이미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추후 예결위 상임위화 합의여부에 관한 신청인의 견해를 게재한 사실은 소명되나 이 기사를 접한 독자로서는 이를 신청인의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는 2004년 6월 5일자 A5면 『예결委 상임위 합의했지만』 제하의 기사에서 “열린우리당이 여야대표회담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기로 합의하여 놓고도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4년 6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4서울중재269)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가 중재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4카기6193 반론보도심판

신 청 인 : 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45

대표자 당의장 이 부 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찬 진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변론종결 : 2004. 8. 20.

판결선고 : 2004. 9. 10.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의 A6면 좌측 상단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28급 활자크기로, 본문은 위 ‘조선일보’ 본문 활자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22급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매일 금 삼백만(3,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선일보'의 6면 상단에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2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조선일보' 본문 활자 크기로, 반론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22급 활자크기로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위 '조선일보'의 1면 좌측 최상단에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2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조선일보' 본문 활자 크기로, 반론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22급 활자크기로 게재하라.

3.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매주 금 삼천만(30,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조선일보'(이하 '이 사건 간행물'이라 한다) 2004. 6. 5.자 A6면에 "예결委 상임위 합의했지만..."이라는 제목 아래, "국회 내준 野, 정부견제 승부수, 정부대리 興, '보완' 시간끌기"라는 발문을 달고, 별지 제1원문 보도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한 사실, 피신청인은 또한 이 사건 간행물 2004. 6. 12.자 A1면 좌측 최상단에 "분양원가 공개 오늘 결론"이라는 제목 아래 "盧대통령·千대표 어제회동"이라는 발문을 달고 별지 제2원문보도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한 판단

##### 가. 반론보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기사에서 직접 언급된 신청인은, '2004. 5. 3. 여야대표회담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된 상임위원회로 하기로 합의하여 놓고도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4. 5. 3. 열린 여야대표회담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라고 한다) 상임위화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제1기사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사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간행물 2004. 6. 7.자 A5면에 신

청인의 반론을 충분히 게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기사에 관한 신청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안건에 대하여 논의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특히 민감한 사안의 경우 그 합의 여부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는 물론이고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성, 표현 등에 비추어 위 기사가 '예결위를 상임위로 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작성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기사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신청인이 이미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간행물 2004. 6. 7.자 A5면에 예결위 상임위화 합의 여부에 관한 신청인의 견해를 게재한 사실은 소명되나, 이 사건 제1기사의 분량, 형식, 내용과 위 2004. 6. 7.자 기사(이하 '이 사건 제1정정기사'라고 한다)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정정 기사를 접한 독자로서는 위와 같은 신청인의 견해 표명을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정정기사만으로는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반론보도문의 내용, 형식 등

(1) 반론보도문의 내용

그러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 내용 중 『제목 : 열린우리당, 예결위의 상임(위)화 합의한 사실 없다』(이하 '제1반론문'이라 한다), 『열린우리당은 여야대표회담에서 국회 예결위를 상임위로 하는데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이후 이러한 합의를 한 것을 후회한다거나 위 합의를 반복한다거나 위 합의의 의미를 축소한 사실이 없으며, 여야 대표회담의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이하 '제2반론문'이라 한다)는 부분은, 신청인의 적극적인 의견 내지 가치표명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충적·추가적 진술

로서 이를 그대로 게재할 경우 보통의 주의를 가진 일반 독자들로서는 반론보도의 범위를 넘는 정정보도의 의미 또는 정상적인 기사로 오인할 염려가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 (2) 반론보도문의 범위

결국, 문제가 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제1기사 내용과 길이 및 이로 인하여 침해된 신청인의 법익, 신청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이 사건 기사에서 반영된 신청인의 반론의 대상 등 기록상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게재방법은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위치, 활자크기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며, 이와 아울러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명령을 발령하기로 한다.

## 3.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2004. 6. 11. 신청인의 천정배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없고, 천정배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해 청와대에 대통령 긴급면담을 요청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사실에 반하는 이 사건 제2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마치 신청인과 대통령 사이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로 큰 분란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별지 3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별지 3 반론보도문 중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 총선 이후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왔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적극적인 의견 내지 가치표명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별지 3 반론보도문의 요지는, 천정배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면담한 사실도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당해 보도에 대한 고의, 과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반론문을 무료로 게재·방송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바,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인 점,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근본 취지가 편면적인 정보의 흐름을 수정하여 보다 진실하고 공익에 합치하는 정보의 흐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인 점, 정간

법은 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만이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행사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기사가 게재된 2004. 6. 12. 오전 신청인측의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회의장 3인과 청와대측의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영주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이병완 홍보수석비서관 3인이 회동하여 분양원가 공개 논의에 관한 의견을 조율한 사실, 당시 신청인과 대통령이 각각 분양원가 공개에 관하여 표명한 의견의 내용이 달라 여론의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던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회의에 참석한 위 참석자들의 수나 신청인 또는 청와대 내에서의 지위, 실제로 이 사건 제2기사에 언급된 신청인의 원내대표도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그 면담의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제2기사로 인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이 방해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의 천정배 원내대표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이나 대통령을 면담하였다는 기사가 게재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도대체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러우므로 신청인이 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로서 위와 같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실질적 이익 내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2기사가 게재된 간행물의 바로 다음호인 2004. 6. 14.자 A8면에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11일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이하 '이 사건 제2정정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2기사를 게재할 무렵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여러 견해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당인 신청인과 청와대의 입장은 신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언론기관 및 다수 국민들의 참여한 관심사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신청인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견해를 표명한바 있어 피신청인도 최종적인 결론 도출 여부를 둘러싸고 시급하게 관련 기사를 취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그런데 위와 같이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기획보도나 심층취재가 아닌 여론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중요한 정치적 현안으로서 긴급한 보도를 요하는 사항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파악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명백하게 부합하는 기사만을 게재할 의무를 언론기관에 부과한다면 사실상 언론기관으로서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꺼려 하는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는 사후적 확인보도만을 할 것을 강요하는 셈이 될 우려가 있는 점, 신청인은 비단 위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아니더라도 원내 다수당으로서 언론이나 여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신청인과 관련된 기사의 분량이나 수, 필요성은 일반 국민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만일 언론기관이 관련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반론까지 일일이 허용하여야 한다면 지면의 제한이나 언론기관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서는 취재나 기사의 작성에 극도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일반 개인이 피해자인 경우와는 달리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신청인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비추어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2정정기사로써 스스로 사후 보도에 의하여 종전의 보도를 정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제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종합하여 보면, 결국 신청인으로서 원문보도인 이 사건 제2기사에 대응할 실질적 이익 내지 필요성을 상실하여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제2기사에 관한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 2항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태 운

판사 김 연 학

판사 전 휴 재

#### 〈별지 1〉 반론보도문

조선일보 2004. 6. 5.자 A5면은 “예결위 상임위 합의했지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5. 3. 개최된 여야대표회담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기로 합의하여 놓고도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지난 4월 제17대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원내 제2당이 된 한나라당의 대표는 2004. 5. 3. 여야대표회담을 열어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개혁특위’를 설치하여 국회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 등의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을 뿐, 국회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열린우리당

### 〈별지 2〉 반론보도문

- 제 목 : 열린우리당, 예결위의 상임화 합의한 사실 없다.
- 본 문 : 지난 4월 제17대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원내 제2당이 된 한나라당의 대표는 2004년 5월 3일 여야 대표회담을 열어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개혁특위」를 설치하여, 국회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여야는 국회 예결위의 ‘상설화’ 문제를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을 뿐 국회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여야 대표회담에서 국회 예결위를 상임위로 하는데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이후 이러한 합의를 한 것을 후회한다거나 위 합의를 번복한다거나 위 합의의 의미를 축소한 사실이 없으며, 여야 대표회담의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

반론보도인 열린우리당

### 〈별지 3〉 반론보도문

- 제 목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론보도문
- 본 문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오후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천정배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저널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해 청와대에 대통령 긴급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노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입장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도 없다.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 총선 이후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왔다.

반론보도인 열린우리당

〈제1, 제2 원문보도〉 생략 — 편집자 주

〈반론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토론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을 방송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한  
생방송 토론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13.자 판결 (2004카합2433)

##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2005년 1월 13일 조선일보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이 출연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토론자의 발언이 방송사의 기획의도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방송사가 이를 편집하여 방송할 수 없으므로 생방송 토론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토론자들의 주장을 방송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일방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다른 토론자들이 반박할 수 있으므로 반대 사실의 주장을 통한 피해자의 구제 및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반론보도 제도의 취지가 프로그램 자체내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허용할 경우 반대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도 반론보도를 허용할 수 밖에 없어 토론장이 반론보도를 통하여 계속되는 듯한 결과가 될 뿐인데 반해 방송사로서는 자신이 편집

통제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반론보도를 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어 결국 사회 현안에 대한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 자체가 퇴조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송사가 토론자들을 특정한 의견을 가진 자들로만 구성하거나 토론 방식이나 진행 등을 편파적으로 하는 등으로 토론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토론자들의 사실적 주장을 방송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토론자들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KBS-1TV는 2004년 7월 17일 23:00 『생방송 심야토론 - 친일논란, 역사청산인가 정치적 탄압인가』라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토론자중 한 명이 “조선일보가 일제시대 때 조선의 처녀들에게 중군위안부가 되라고 선동하는 보도를 하는 등 친일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방송하자, 신청인은 이 방송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4년 8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4서울중재390)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4카합2433 반론보도심판

신 청 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손 찬 오

변론종결 : 2004. 12. 9.

판결선고 : 2005. 1. 13.

주 문 :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생방송 심야토론'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청색 바탕의 화면 상단에 흰색 글자로 "조선일보사의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기재의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을 통상 뉴스 보도와 같은 크기의 흰색 글자로 시청자들이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신청인은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신청인은 국가기간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심사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하는 방송사이다.

나. 피신청인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대한 정치권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을 도모한다는 기획의도 아래 2004. 7. 17. 23:00부터 다음날 00:50까지 KBS 제1텔레비전의 "생방송 심야토론 - 친일논란, 역사청산인가 정치적 탄압인가"라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다. 위 토론 프로그램에는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 정청래(열린우리당),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박한용,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정문현 및 위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공성진(한나라당),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안수, 변호사 전원책 등이 토론자로 출연하였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① 친일진상규명법, 어떻게 볼 것인가, ② 개정안 추진의 배경은, ③ 개정안 내용, 적절한가, ④ 향후 추진 계획 및 해법 등의 토론주제에 대하여 양측의 토론자들이 교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라. 그런데 토론 도중 정청래는 "자, 우리 공성진 의원님, 백범 김구 선생님 존경하십니까?, 예, 백범 김구 선생님 존경을 우리 국민들이 다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반민특위에서 살생부 초안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람들은 살생부에 올려야 된다, 그리고 처단을 해야 된다' 하고 올린 분이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입니다. 그리고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팩트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발표를 했느냐? 이것이 월간중앙 2001년 8월호에서 이게 지금 게재하고 있는 내

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팩트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번 친일진상규명법은 이러한 팩트의 진실을 알자는 겁니다.” 및 “17대에서는 지방에서 한 것도 지금 같이 조사를 대상에서 포함시키자라는 거구요. 자, 창씨개명을 주창하거나 권유한 행위,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창씨개명을 한 것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친일과 소극적 친일, 생계형 친일과 생존형 친일, 자발적 친일 이것을 다 구분해 봐야 됩니다. 창씨개명을 한 국민들은 이것은 생계형, 생존형 친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친일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창씨개명을 적극 주창하고 그리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조선의 처녀들이여, 국군의 위안, 위안부가 되라’라고 주창을 했거나, 아니면 ‘조선의 청년들이여, 일본 황국식민의, 식민의 군대가 돼서 장렬하게 전사해라,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싸워라’ 이렇게 주창을 했던 것은요 친일행위입니다. 이런 것을 16대 법안에서는 규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발언도 그대로 방송되었다.

## 2. 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 공표된 정청래의 위 발언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으므로 일지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을 방송한 것과 이를 방송하지 아니한 경우 1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이 출연하여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토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토론자의 발언 내용이 방송사의 기획의도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방송사가 이를 편집하여 방송할 수 없으므로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토론자들의 주장을 방송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일반적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일방 토론사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다른 토론자들이 반박할 수 있으므로 반대 사실의 주장을 통한 피해자의 구제 및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반론보도제도의 취지가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허용할 경우 일방 토론사의 사실적 주장뿐만 아니라 반대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도 반론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토론과정의 반론보도를 통하여 계속되는 듯한 결과가 될 뿐인데, 반해, 방송사로서는 매회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자신이 편집·통제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반론보도를 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어 결국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 자체가 퇴조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송사가

토론자들을 특정한 의견을 가진 자들로만 구성하거나 토론 방식이나 진행 등을 편파적으로 하는 등으로 토론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토론자들의 사실적 주장을 방송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토론자들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는 당해 토론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토론자의 구성 및 토론 방식 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토론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건 일

판사 김 상 훈

판사 오 권 철

〈별 지〉 반론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3. 24.자 판결 (2004카합3167)

##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2005년 3월 24일 건강보조식

품 수입 판매회사인 ○○○ 주식회사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이 청구한 반론보도문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 내용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KBS-1TV가 2004년 10월 27일 21:00 『뉴스9』, 23:00 『뉴스라인』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이 수입 판매중인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데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4년 12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4서울중재526)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가 중재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4카합3167 반론보도심판신청

신 청 인 : ○○○ 주식회사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 라 옥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신

변론종결 : 2004. 3. 10.

판결선고 : 2004. 3. 24.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방송하는 21:00 “뉴스9” 및 23:00 “뉴스라인”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그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방송하는 21:00 “뉴스9” 및 23:00 “뉴스라인”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2 반론보도신청문을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3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신청인은 건강보조식품 등의 수입·판매회사이고, 피신청인은 텔레비전 방송 등의 업무를 행하는 방송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방송사업자이다.

나. 신청인은 2002. 8. 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제품명이 ‘○○○’인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여 왔다.

다. 피신청인은 2004. 10. 27. ‘KBS 뉴스9’ 프로그램에서 ‘[현장추적] 검증 안된 가슴성형 제품 버젓이 유통’이라는 제목으로 별지3 KBS 뉴스9 방송내용 기재와 같은 방송을, 같은 날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에서 ‘먹기만 하면 커진다?’라는 제목으로 별지4 KBS 뉴스라인 방송내용 기재와 같은 방송(이하 위 두 방송을 총칭하여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소갑2의1, 소갑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방송에 의하여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방송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방송에 대하여 별지1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같은 반론보도문 내용을 방송하여 줄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2 반론보도신청문 중 (4)항의 내용은 이 사건 방송의 내용에 비추어 “1년간 1,000만 원 상당을 복용하였음에도 효과가 없는 소비자도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10)항과 (11)항 부분은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반론이거나, 혹은

이 사건 방송이 보도한 내용과 그 내용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반론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론보도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방송법 제9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청구권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별지1 반론보도문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는 신청인의 제품 광고에 사용되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방송이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1 반론보도문이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간접강제

한편,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가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간접강제명령을 발하기로 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만 오

판사 이 철 원

판사 김 선 일

### 〈별지 1〉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내 용 : 2004. 10. 27. 'KBS 뉴스9' 및 'KBS 뉴스라인' 에서 ○○○ 주식회사가 수입하고 있는 “○○○”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데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고,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으며, 1년간 1,000만 원 상당을 복용하였음에도 효과가 없는 소비자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위 보도에 대하여 ○○○ 주식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는 2002. 8. 5.부터 “○○○”이라는 상표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은 네덜란드의 G사가 제조한 제품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식품규격적부시험”을 거쳐 정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에 대하여 “폐경기전 여성에 대한 실험”과 “쥐에 대한 동물실험”을 마치고, 이 실험에 대한 결과를 2003. 12. “최신의학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주식회사는 “○○○”을 병원 및 약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의약품이라고 명시적으로 광고선전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 〈별지 2〉 반론보도신청문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내 용 : 2004. 10. 27. 'KBS 뉴스9' 및 'KBS 뉴스라인' 에서 ○○○ 주식회사가 수입하고 있는 “○○○”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데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고,

(3)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으며,

(4) 1년간 1,000만 원 상당을 복용하였음에도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5) 위 보도에 대하여 ○○○ 주식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6) ○○○ 주식회사는 2002. 8. 5.부터 “○○○”이라는 상표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7) “○○○”은 네덜란드의 G사가 제조한 제품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식품규격적부시험”을 거쳐 정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8)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에 대하여 “폐경기전 여성에 대한 실험”과 “쥐에 대한 동물실험”을 마치고, 이 실험에 대한 결과를 2003. 12. “최신의학지”에 게재하였습니다.

(9) ○○○ 주식회사는 “○○○”을 병원 및 약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의약품이라고 명시적으로 광고선전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10) “○○○”은 약 6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2번 각 5정씩 총 10정을 반드시 물 2리터와 함께 섭취하여야 하며, 그 효과 정도는 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틀릴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복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가슴확대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1) “○○○”은 네덜란드로부터 정식으로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부작용은 없습니다.

〈별지 3〉 KBS뉴스9 방송내용 생략 — 편집자주

□